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36호
**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과
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58호(2004.2.25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48호(2005.12.30.)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·2지구 실시계획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08호(2022.10.0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9일

서울특별시장

☐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

1. 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 없음)

- 명 칭 : 은평 재정비촉진지구
- 유 형 : 주거지형(시범 뉴타운지구)
- 위 치 :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
- 면 적 : 3,492,649.3㎡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(변경)

- 재정비촉진사업 : 도시개발사업 (수용 또는 사용방식)
- 시행기간
 - 당초 : 2004.02.25 ~ 2022.12.31
 - 변경 : 2004.02.25 ~ 2025.12.31
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 없음)

4.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

-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 : 「붙임1」 과 같음
-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 : 「붙임2」 과 같음

5. 지구별 주택 공급계획(변경 없음)

6.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(변경 없음)

7.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8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)

-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정책팀(전화:02-2133-7217) 및 은평구청 도시계획과(전화:02-351-7403),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기획부(전화:02-3410-7578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☐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

1. 사업의 명칭(변경 없음) :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

2. 사업의 목적(변경 없음)

-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·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,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
-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
-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의 제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,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

3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 없음)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
- 면 적 : 3,492,649.3m²

4.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
- 시행자 :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

5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(변경)

- 1지구 : 2004.02.25 ~ 2017.12.31
- 2지구
 - 당초 : 2005.12.30 ~ 2022.12.31
 - 변경 : 2005.12.30 ~ 2023.12.31
- 3지구
 - 당초 : 2006.12.28 ~ 2022.12.31
 - 변경 : 2006.12.28 ~ 2025.12.31

6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(변경 없음)

- 수용 및 사용방식

7.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(변경) : 「붙임2」와 같음
8.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
 - 공람기간 :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
 -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정책팀(전화:02-2133-7217),
은평구청 도시계획과(전화:02-351-7403),
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기획부(전화:02-3410-7578)
 - 관계도서 : 공람장소 비치 도면과 같음
9.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·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: 해당 없음
10.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서 : 「붙임3」와 같음
11.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
 - 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 사항 이행할 것.

「붙임1」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(변경 없음)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총계		3,492,649.3	-	3,492,649.3	100.00	
주거 용지	소 계	1,353,647.7	-	1,353,647.7	38.76	
	주 택 용 지	1,309,014.3	-	1,309,014.3	37.49	
	단독주택용지	66,415.6	-	66,415.6	1.90	
	공동주택용지 (아파트)	1,242,598.7	-	1,242,598.7	35.59	
	준주거시설용지	36,776.5	-	36,776.5	1.05	
	근린생활 시설용지	7,856.9	-	7,856.9	0.22	
상업 용지	소 계	78,751.5	-	78,751.5	2.25	
	일반상업	78,751.5	-	78,751.5	2.25	
도시 기반 시설 용지	소 계	1,928,939.6	-	1,928,939.6	55.22	
	도로	508,158.3 (526,818.9)	-	508,158.3 (526,818.9)	14.55 (15.08)	· 중복 결정된 도로 17,787.8㎡는 하천(11,469.8㎡), 근린공원(6,318.0㎡**) 면적에 편입 · 구거용지 내 도로 872.8㎡는 구거용지 면적에 편입
	주차장	20,961.1	-	20,961.1	0.60	7개소 · 주차장③의 중복입체 결정된 사항은 구파발역 연결통로임
	자동차정류장	19,751.4	-	19,751.4	0.57	2개소
	철도시설	4,159.1 (28,941.3)	-	4,159.1 (28,941.3)	0.12 (0.83)	· 철도본선(19,771.1㎡)은 하천 1,236.6㎡*, 도로 16,017.6㎡, 근린공원 2,313.3㎡, 완충녹지 100.4㎡, 연결녹지 103.2㎡에 편입 · 구파발역(3,975.5㎡)는 도로 3,838.2㎡, 공원 137.3㎡에 편입 · 구파발역과 입체결정된 1,035.6㎡는 상업용지에 편입
	완충녹지	36,317.0	-	36,317.0	1.04	
	연결녹지	26,052.7 (26,111.7)	-	26,052.7 (26,111.7)	0.75 (0.75)	· 중복 결정된 연결녹지 59.0㎡는 하천면적에 편입
	경관녹지	135.8	-	135.8	-	
	도시자연공원	9,160.5	-	9,160.5	0.26	· 서오능 도시자연공원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도시 기반 시설 용지	근린공원	775,698.6	-	775,698.6	22.21
	문화공원	65,279.7	-	65,279.7	1.87
	소공원	1,392.0	-	1,392.0	0.04
	공공공지	672.1	-	672.1	0.02
	자원회수시설	8,512.5	-	8,512.5	0.24
	수도시설	- (7,856.5)	-	- (7,856.5)	- (0.22)
도시 기반 시설 용지	공동구	520.4	-	520.4	0.01
	공공청사	73,210.3	-	73,210.3	2.10
	학교	145,069.4	-	145,069.4	4.15
	박물관	- (6,530.1)	-	- (6,530.1)	- (0.19)
	문화시설	16,554.5	-	16,554.5	0.47
	체육시설	8,039.3 (19,575.2)	-	8,039.3 (19,575.2)	0.23 (0.56)
	도서관	1,324.6	-	1,324.6	0.04
	사회복지시설	16,171.5	-	16,171.5	0.46
	하천	145,349.5	-	145,349.5	4.16
	유수지	13,300.6 (22,509.3)	-	13,300.6 (22,509.3)	0.38 (0.64)
	종합의료시설	21,612.8	-	21,612.8	0.62
	폐기물처리시설	11,535.9	-	11,535.9	0.33
기타 시설 용지	소 계	131,310.5	-	131,310.5	3.77
	주차장용지	1,969.7	-	1,969.7	0.06
	종교시설	31,137.8	-	31,137.8	0.89
	주유소	4,741.6	-	4,741.6	0.14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유치원	3,889.3	-	3,889.3	0.11	6개소
공익시설	6,569.8	-	6,569.8	0.19	3개소
군사시설	3,913.3	-	3,913.3	0.11	5개소
편익시설	35,694.5	-	35,694.5	1.02	8개소
자동차관련	8,478.9	-	8,478.9	0.24	3개소
커뮤니티 시설용지	398.5	-	398.5	0.01	2개소
업무시설용지	3,351.8	-	3,351.8	0.10	1개소
구거용지	10,686.3	-	10,686.3	0.31	
문화복합용지	20,479.0	-	20,479.0	0.59	

주1 : * 철도와 중복 결정된 하천 1,236.6㎡ 중 947.9㎡는 도로와 중복 결정됨

주2 : ** 도로와 중복 결정된 근린공원 6,318.0㎡ 중 46㎡는 수도시설과 중복 결정됨

주3 : ()는 중복결정 및 입체결정 면적 포함

「붙임2」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
1. 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(변경 없음)

2.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 없음)

3. 용도지역(변경 없음)

4. 도시계획시설(변경)

가. 교통시설(변경)

1) 도로(변경)

■ 도로 총괄표(변경 없음)

구 분		류 별	폭원(m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-	140	29,760.4	526,818.9	
일 반 도 로	소 계		-	5	5,958.6	201,606.6	
	대로	1 류	37~50	2	2,634.0	110,085.2	
		3 류	20~35	3	3,324.6	91,521.4	
	소 계		-	35	15,386.7	265,858.1	
	중로	1 류	20~26	9	7,147.7	162,193.0	※ 중복결정된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상 하천, 공원 면적에 편입 (하천:11,469.8㎡, 공원:6,318.0㎡)
		2 류	15~22.5	12	3,047.2	36,633.0	
		3 류	12~20	14	5,191.8	67,032.1	※ 구거용지 내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상 구거용지 면적에 편입(872.8㎡)
	소 계		-	100	8,415.1	59,354.2	
	소로	1 류	8~16.7	13	899.0	9,936.0	
		2 류	8~9	19	2,573.9	22,004.0	
		3 류	2~8	68	4,942.2	27,414.2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3	46	4	특수 도로	33.2	소3-18 진관동 125-2	구역계 진관동 125-2	보행자전 용 도로		서고시377 07.10.18	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변경	소로	3	46	4	국지 도로	33.2	소3-18 진관동 125-2	구역계 진관동 125-2	보행자우 선 도로		서고시377 07.10.18	

※ 상기 시설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3-46	소로3-46	- 기능 - 특수도로 → 국지도로 - 사용형태 - 보행자전용도로 → 보행자우선도로	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및 유지관리청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 및 사용 형태를 변경

2) 주차장(변경 없음)

3) 철도(변경 없음)

4) 자동차정류장(변경 없음)

나. 공간시설(변경 없음)

다.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 없음)

라. 공공문화체육시설(변경 없음)

마. 방재시설(변경 없음)

사. 보건위생시설(변경 없음)

아. 환경기초시설(변경 없음)

5. 기타시설(변경 없음)

「붙임3」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

1. 토지이용계획(변경 없음)
2. 주택공급계획(변경 없음)
3. 도시관리계획(변경) : 「붙임2」와 같음
4. 지구단위계획(변경) : 「붙임4」와 같음
5.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: 변경 없음

「붙임4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및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 없음)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)
 - 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(변경 없음)

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(변경)

- 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)
 - 공동주택 용지(변경없음)
 - 단독주택 용지(변경)

구분	도면 번호	가구 번호	획 지					비고
			획지 번호	위 치	면 적(㎡)			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단독 3	㉔	-1	진관동 132-13 일원	329.9	-	329.9	존치시설
변경	단독 3	㉔	-1	진관동 132-13 일원	329.9	-	329.9	한옥지정구역

※ 상기 용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■ 변경사유서

가구번호	변경내용 및 변경사유
단독3-②-1	◦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라, - 단독3-②-1 존치시설 해제 및 해당 용지를 한옥지정구역으로 변경

- 근린생활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준주거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상업 용지(변경 없음)
- 주차장 용지(변경 없음)
- 자동차정류장 용지(변경 없음)
- 자원회수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수도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공동구 용지(변경 없음)
- 공공청사 용지(변경 없음)
- 유치원 용지(변경 없음)
- 학교 용지(변경 없음)
- 도서관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박물관 용지(변경 없음)
- 문화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사회복지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체육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폐기물처리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종교 용지(변경 없음)
- 주유소 용지(변경 없음)
- 공익시설 용지(변경 없음)

- 편익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군사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자동차관련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종합의료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유수지 용지(변경 없음)
- 주차장시설 용지(부설주차장)(변경 없음)
- 커뮤니티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업무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문화복합 용지(변경 없음)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(변경)

• 공동주택 용지(변경없음)

• 단독주택 용지(변경)

구분	도면 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계 획 내 용	비 고
기정	단독	단독 1 ⑨~⑩ 단독 2 ②~④ 단독 3 ②-1	용도	◦ 지정용도 : 단독주택 (다중주택 제외) ◦ 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50% 이하	
			용적률	100% 이하	
			높이	◦ 최고층수 2층 이하(8m이하) 단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가.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.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.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. 지붕의 경사가 3: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	
			배치	-	
			형태	◦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	
			색채	◦ 원색의 사용을 금함	
			건축선	-	
변경	단독	단독 1 ⑨~⑩ 단독 2 ②~④	용도	◦ 지정용도 : 단독주택 (다중주택 제외) ◦ 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단독 3 ②-1 제외
			건폐율	50% 이하	
			용적률	100% 이하	
			높이	◦ 최고층수 2층 이하(8m이하) 단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가.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.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.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. 지붕의 경사가 3: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	
			배치	-	
			형태	◦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	
			색채	◦ 원색의 사용을 금함	
			건축선	-	

※ 상기 용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■ 변경사유서

가구번호	변경내용 및 변경사유
단독3-②-1	◦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라, 단독3-②-1 존치시설 해제 및 해당 용지를 한옥지정구역으로 변경

• 단독주택 용지(한옥지정구역) (변경)

구분	도면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단독	단독 1 ①-8~12, ②, ③, ④, ⑤-3, ⑥, ⑦, ⑧	용도	◦ 허용용도 : 단독주택(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: 2가구 이하),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: 2가구 이하), 제1종근린생활시설(일용품 등의 소매점(공방포함)에 한하며 바닥면적 합계 300㎡이하)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에 한하며 바닥면적 합계 300㎡ 이하) ◦ 불허용도 :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단독형 한옥건축 용지
			건폐율	50% 이하	
			용적률	100% 이하	
		단독 2 ①	높이	◦ 최고층수 2층 이하 / 지표면으로부터 (7+0.65a)m 이하	
			배치	◦ 대지 내 북측 진입을 지양	
		단독 3 ④-8~14, ⑤, ⑥	형태	◦ 한옥건축지정 :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.	
			색채	◦ 원색의 사용을 금함	
			건축선	-	
변경	단독	단독 1 ①-8~12, ②, ③, ④, ⑤-3, ⑥, ⑦, ⑧	용도	◦ 허용용도 : 단독주택(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: 2가구 이하),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: 2가구 이하), 제1종근린생활시설(일용품 등의 소매점(공방포함)에 한하며 바닥면적 합계 300㎡이하)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에 한하며 바닥면적 합계 300㎡ 이하) ◦ 불허용도 :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단독형 한옥건축 용지 단독 3 ②-1 포함
			건폐율	50% 이하	
			용적률	100% 이하	
		단독 2 ①	높이	◦ 최고층수 2층 이하 / 지표면으로부터 (7+0.65a)m 이하	
			배치	◦ 대지 내 북측 진입을 지양	
		단독 3 ②-1, ④-8~14, ⑤, ⑥	형태	◦ 한옥건축지정 :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.	
			색채	◦ 원색의 사용을 금함	
			건축선	-	

※ 상기 용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■ 변경사유서

가구번호	변경내용 및 변경사유
단독3-②-1	◦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라, 단독3-②-1 존치시설 해제 및 해당 용지를 한옥지정구역으로 변경

- 근린생활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준주거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상업 용지(변경 없음)
- 주차장 용지(변경 없음)
- 자동차정류장 용지(변경 없음)
- 자원회수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공동구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공공청사 용지(변경 없음)
- 학교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도서관 용지(변경 없음)
- 사회복지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문화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체육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종합의료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폐기물처리시설 용지(변경 없음)
- 종교 용지(변경 없음)
- 주유소 용지(변경 없음)
- 공익시설 용지(변경 없음)

• 편익시설 용지(변경)

구분	도면 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편익	편익 8, 11-2	용도	◦ 지정용도 : 특화시설(20% 이상) ◦ 완화용도 : 업무시설(바닥면적 제한 완화, 오피스텔 제외) ◦ 허용용도 :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, 판매시설,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, 격리병원 제외), 노유자시설 ※ 특화시설 :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 제외), 교육연구시설, 수련시설(생활권 수련시설), 운동시설(육외 골프연습장 제외), 방송통신시설(방송국, 촬영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) ※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◦ 불허용도 : 지정용도, 완화용도,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50% 이하	
			용적률	250% 이하	
			높이	-	
			배치	-	
			형태	◦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	
			색채	◦ 원색의 사용을 금함	
			건축선	◦ 건축한계선 : 2~5m	
변경	편익	편익 8, 11-2	용도	◦ 지정용도 : 특화시설(20% 이상) ◦ 완화용도 : 업무시설(바닥면적 제한 완화, 오피스텔 제외) ◦ 허용용도 :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, 판매시설,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, 노유자시설 ※ 특화시설 :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 제외), 교육연구시설, 수련시설(생활권 수련시설), 운동시설(육외 골프연습장 제외), 방송통신시설(방송국, 촬영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) ※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◦ 불허용도 : 지정용도, 완화용도,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50% 이하	
			용적률	250% 이하	
			높이	-	
			배치	-	
			형태	◦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	
			색채	◦ 원색의 사용을 금함	
			건축선	◦ 건축한계선 : 2~5m	

※ 상기 용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(기재 생략)

■ 변경사유서

가구번호	변경내용 및 변경사유
편익8, 11-2	◦ 은평구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허용용도 중 “요양병원”을 제외함

- 군사시설 용지(변경 없음)
 - 자동차관련시설 용지(변경 없음)
 - 주차장 용지(부설주차장)(변경 없음)
 - 커뮤니티시설 용지(변경 없음)
 - 업무시설 용지(변경 없음)
 - 문화복합 용지(변경 없음)
- 3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 없음)
- 4)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 없음)
- 5)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 없음)

